

제 2012-CQ-0027 호



안 전 인 증 서

주식회사동명

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62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안전모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

DMS-D-3002

용량·등급

ABE

인증번호

12-AV2CQ-0027

인 증 기 준

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(노동부고시 제2009-38호)

인 증 조 건

아래 주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.

주식회사동명,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62

2012년 11월 23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